

보증신용장통일규칙과 청구보증통일규칙 비교분석*

박 세 운**

한 기 문***

-
- I. 서 론
 - II. ISP98과 URDG758의 성격과 연혁
 - III. ISP98과 URDG758의 비교
 - IV. 적용상 유의점
 - V. 결 론
-

주제어 : 보증신용장통일규칙, 청구보증통일규칙, 독립보증

I. 서 론

독립적 은행보증에 관한 국제적 규범으로는 URDG758,¹⁾ UCP600²⁾ ISP98,³⁾ 1995년 UN협약⁴⁾ 등이 있고, 또한 각국의 국내 법률이 있다. 그 중 청

* “이 논문은 창원대학교 경상대학 2009년 발전기금(학술연구장려금)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창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위원장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전임강사, ICC Korea 국제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 이는 『청구보증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을 지칭한다.

2) 이는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을 말한다.

구보증에는 실무상 영국법이나⁵⁾ 현지법률⁶⁾ 또는 URDG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청구보증에 URDG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으며, 현재는 발행되는 전체 청구보증의 약 20-30% 정도가 URDG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청구보증관련 판례를 보아도 URDG가 적용되지 않았으나,⁷⁾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 은행에서 발행하는 청구보증에 URDG가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그 사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⁸⁾ 한편 미국 은행이 주로 발행하고 있는 보증신용장에는 UCP600과 ISP98이 각각 50% 정도 적용되고 있다.

위의 여러 규정 중 청구보증서에 적용하기 위하여 URDG, 보증신용장에 적용하기 위하여 ISP98이 제정되었지만 UCP가 준거규칙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UCP가 국제상업회의소(이하에서는 ICC라고 함)가 제정한 통일규칙 중에서 가장 오랜 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UCP가 보증신용장에도 쓰일 수 있다는 조항에 힘입어 은행이나 무역기업의 실무자가 무심코 쓰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특히 은행 영업 창구에서는 무역외거래에 사용되는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URDG758과 ISP98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구보증 또는 보증신용장 발행을 신청하는 개설의뢰인은 자신이 신청하는 보증에 그들 거래의 필요성과 구조를 고려하여 어떤 규칙을 적용규칙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활동에서 플랜트 수출이나 건설공사⁹⁾의 비중이

- 3) 이는 1998년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을 말한다.
- 4) 이는 『독립보증과 보증신용장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을 말한다.
- 5) 영국에는 청구보증에 관한 성문법이 없으므로 청구보증에 영국법이 적용되도록 하면 보증당사자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된다.
- 6) Karya Lagenda Sdn Bhd 대. Kejuteraan Bintai Kindenko Sdn Bhd & Anor 사건에서는 청구보증서에 적용규칙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법원은 말레이시아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렸다.[2008] 6 MLJ 636 (Putrajaya) (September 6, 2008) [Malaysia]
- 7) 대법원 1994.12.9선고 93다43873 판결 ; 서울고법 2001.2.27선고 2000나8863 판결 참조.
- 8) Roy Goode, "ICC approves revised rules on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Credit Insight, 16-1, 2010.
- 9) 선수금환급보증 등 보증 발행이 수반되는 수출인 해외건설 수주는 2000년 54억달러에서

크므로 우리나라 기업과 은행이 보증신청인과 구상보증인이 되므로 URDG758을 적용규칙으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런데 영국에는 보증에 관한 성문법이 없고, 요르단과 시리아와 같은 국가에는 청구보증에 관한 국내법이 전혀 없으므로 영국법 또는 현지 법률을 청구보증의 적용규칙으로 하는 것은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가 많다.¹⁰⁾

우리나라에서 보증신용장통일규칙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김영훈(2000), 서백현(2001), 이상훈(2003) 및 박석재(2000, 2002, 2003) 등의 연구가 있다. 이 선행연구는 URDG758이 시행되기 전의 연구이고 URDG758에 대한 연구로는 박세운·한기문·허해관(2009, 2010)의 선행연구가 있으나 개론적인 수준의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제6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과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을 비교는 박세운(2010)의 연구가 있으나 이 역시 URDG758과의 비교는 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URDG758과 ISP98과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고, 보증 관련 당사자의 유의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계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성격상 문헌연구의 방법을 취한다.

II. ISP98과 URDG758의 성격과 연혁

보증신용장과 청구보증서는 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 지급보증서로서 이것을 발행한 원인을 제공한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기초계약관계 및 개설의뢰인과 수익자와의 다른 계약관계와도 독립된 것으로서,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서 명시한 서류만 제시되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약정하고 있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매우 복잡하고 상세하며 방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간략하게 기술된 신용장통일규칙 및 청구보증통일규칙과 비교된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의 어떤 조항은 지나치게 은행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2010년에는 715억달러로 증가하였으며(2011년 국토해양부통계연보, www.mltm.go.kr) 조선수출은 2000년 84억달러에서 2009년 424억달러로 증가하였다(한국무역협회 통계).

10) 중동국가의 대부분 은행은 자기 국가에 보증에 관한 법률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자국의 국내법이 적용되는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구상보증서를 수리한다.(Mohammad M. Burjaq, Guarantees and the URDG in the Arab world, Documentary Credit Insight 16-2, 2010)

있어서 이것에 익숙하지 않은 개설의뢰인과 수익자는 그것을 채택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에 신용장통일규칙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유용한 조항이 많고 명확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¹¹⁾ 한편 청구보증의 경우 URDG를 준거규정으로 하지 않은 계약분쟁에서 벨기에, 영국, 프랑스, 중국 소송에서 URDG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도 있다.¹²⁾

보증신용장은 미국의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가 1998년 보증신용장통일규칙(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ISP98)이란 새로운 통일규칙을 제정하였고 이것을 ICC가 ICC Publication No. 590으로 발행하였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은 보증신용장을 널리 사용하고 있는 미국의 축적된 30년의 경험과 UCC 5편(UCC Article 5)¹³⁾ 과 UCP를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청구보증은 1992년 URDG458 제정 이후 몇몇 나라와 국제기구에서 주요한 규범으로 채택되었으나¹⁴⁾ 보다 폭넓은 사용을 위하여 제정 약 20년만에 기

11) 박세운, ISP98의 특성과 UCP600과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41권, 2009, 51-78.

12) George Affaki and Roy Goode,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758, ICC, 2011. 439-455 (벨기에 ① Commercial Court of Brussels, 15 December., 1992, S.A. Fabricom and S.A. Laurent Bouillet v. Generale de Banque and ACEC Union Mioniere, 영국 ①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7 November., 1995, Wahda Bank v. Arab Bank PLC. ②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15 July 2008, Uzinterimpex JSC v. Standard Bank plc, ③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3 October 2003, Manx Electricity Authority v. JP Morgan Chase Bank 프랑스 ① Commercial Court of Paris, 13 February., 1997, Mauritius v. Caribjet and BNP ② Court of Cassation, Commercial Section, 30 March 2010, Eurocopter v. Banque Meli Iran ③ Court of Cassation, Commercial Section, 22 March 2011, Alstom Hydro Energia Brasil LTDA et al. v. Hydropastaza 중국 Supreme People's Court, 1998, Banca Commerciale Italiana v. Jiangsu Liyang Shafeite Non-woven Co., Ltd. 핀란드 Helsinki District Court 1st Division, 25 March 2010, No. 10/10610, Case book No 09/27536, District Court).

13) Uniform Commercial Code Article 5 (미국 통일 상법전 5편)

14) 바레인 등 중동지역의 이슬람은행은 URDG를 보증에 적용하고 있다(Farideh Tazhibi, "The URDG and demand guarantees in Iran," Documentary Credit Insight, 14- .3, 2008) 이집트, 오만, 아랍 에미레이트, 카타르, 예멘, 이라크, 바레인과 쿠웨이트의 상법은 독립적 보증에 대한 규정이 있다. 그러나 요르단과 시리아의 상법은 부속보증에 관한 규정밖에 없다. (Mohammad M. Burjaq, Guarantees in the Arab world, Documentary Credit Insight 17-2, 2011). 1998년 아프리카 15개 국가가 참가한 ODAHA(Organisation for the Harmonization of Commercial Law in Africa)는 개정

존 관행의 변경을 반영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한편으로는 UCP600 및 ISP98과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년 반에 걸친 준비 작업을 거쳐 2009년 11월에 개정안(URDG758)이 확정되어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3. ISP98과 URDG758의 적용

ISP98과 URDG758은 법률이나 국제조약이 아닌 사적 기관인 ICC가 제정한 규칙이므로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 그것이 적용된다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개설의뢰인과 수익자간의 기초계약에서 ISP98 또는 URDG758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이것이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이 ISP98 또는 URDG758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적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를 발행하게 되면 개설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 당사자가 ISP98과 URDG758을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 적용할 때 이것이 자국에서 법률로서 제정된 것인지 혹은 국제조약으로서 비준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¹⁵⁾

URDG를 반영하여 통일증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oy Goods, "ICC approves revised on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Credit Insight*, 16-1, 2010). 세계은행의 2003년 URDG 채택은 URDG의 적용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Andrea Hauptman, "The struggle to harmonize guarantee practice," *Documentary Credit Insight*, 9-1, 2003)

Farideh Tazhibi, "The URDG and demand guarantees in Iran," *Documentary Credit Insight*, 14-1. (2008)(이하 Farideh Tazhibi(2008)로 인용함). Andrea Hauptman, "Insight on the URDG revision," *Documentary Credit Insight*, 13-4, 2007에서는 ICC Iran의 Farideh Tazhibi가 URDG는 이란법률과 상충되지 않는다고 이란 중앙은행을 설득하여 URDG가 이란에서 적용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 15) ICC Document 470/854(1999년 3월 5일)에 나타난 1998년 12월 30일 카자흐스탄 대법원의 판결(Moscow Narodny Bank(Singapore) 대 Turan Alembank사건)은 청구보증서에 URDG가 적용된다고 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URDG 적용을 거절하였다. 판결에서는 URDG가 자국의 법률 또는 비준된 조약도 아니고, 국제관행도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순수하게 계약의 성격을 갖는 ICC 규칙의 성격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2000년에 ISP98을 승인한바 있고¹⁶⁾, 이와 더불어 2011년 7월에 URDG758을 승인하였다.¹⁷⁾ 물론 그러한 승인이 있었다고 하여 ISP98나 URDG758이 제정 법률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간에 어떠한 적용합의가 없는 경우에, ISP98과 URDG758는 국제거래관행(international trade usage)으로서 재판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¹⁸⁾

III. ISP98과 URDG758의 비교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는 ISP98 또는 URDG758을 적용할 수 있다.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 개설은행 또는 사용자는 이 두 개의 규칙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이 규칙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그 거래의 성격상 각 규칙의 장점 및 한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은 ISP98과 URDG758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1. 개괄

1) 적용범위

ISP98은¹⁹⁾ 개설의뢰인의 채무불이행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보증서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과 관계없이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직불보증²⁰⁾신용장에도 적용

16) UNCITRAL은 지난 2000년 7월에 ISP98, URCB 그리고 Inotems2000을 승인하였다.
http://www.uncitral.org/pdf/english/texts_endorsed/Endorsement_INCOTERMS2000_ISP98_URCB_e.pdf, 2011년7월25일 방문

17) <http://www.iccwbo.org/policy/banking/index.html?id=44522>, 2011년7월25일 방문

18) UN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제13조 제2항

19) ISP98 제1.01조 a항

20) Direct pay Standby, 직불보증신용장의 경우에 개설은행은 기초계약상의 금전채무의 지급기일이 되면 별도의 채무불이행 제시가 없어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한다. 보증신용장통일규칙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2008, p.1

된다. 미국 은행이 발행하는 보증신용장의 50% 이상은 직불보증신용장이다.

URDG758은²¹⁾ 개설의뢰인인의 채무불이행시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보증서에 쓰이는 것으로서 직불보증에는 적합하지 않다.

2) 개설의뢰인과 지시당사자의 구분 여부

ISP98에서는²²⁾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개설의뢰인(applicant)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URDG758에서는²³⁾ 기초계약의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과 대금상환약정을 하는 지시당사자(instructing party)를 구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개설의뢰인이 대금상환약정을 하므로 양자는 동일인이 된다. 그러나 개설의뢰인의 신용도가 떨어져 개설의뢰인의 모회사, 은행 또는 채권자 등이 지시당사자로서²⁴⁾ 대금상환약정을 하게 되므로 양자는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

3) 전자적 제시

ISP98²⁵⁾에서는 보증신용장에서 제시를 종이서류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자서류로 할 것이냐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개설은행이 전자서류 제시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RDG758²⁶⁾에서는 청구보증서에 서류 제시 매체에 대하여 아무런 명시가 없으면 종이서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1) URDG758 제1조 a항과 제15조a항

22) ISP98 제1.04조 6항

23) URDG758 제2조

24) 지시당사자는 기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보증서에 그 명칭이 나타나지 않고, 발행신청서 또는 별도의 상환약정에만 명칭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5) ISP98 제3.11조 c항

26) URDG758 제14조 e항

4) 구상보증

ISP98에서는 별도확약의 발행요청²⁷⁾에 대한 규정을 두어 구상보증신용장이 개설되는 상황을 상정할 뿐 구상보증과 구상보증인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URDG758에서는 이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구상보증은 간접보증, 즉 4자 보증의 경우에 쓰이며 구상보증은 보증으로부터 독립되고, 구상보증상 보증인의 지급청구가 “일치하는 지급청구”에 해당한다면, 구상보증인은 보증인이 원보증상 수익자로부터 실제로 지급청구를 받았는지 여부나, 수익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그 지급이 정당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인에게 지급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상보증은 원칙적으로 구상보증인과 보증인 사이에 존재하는 별개의 계약관계인 위임관계로부터도 독립된다. 따라서 보증인이 수입인으로서 위임계약을 위반하는 것(예컨대, 보증인이 보증을 발행함에 있어 명시하여야 하는 보증조건에 관한 구상보증인의 지시를 보증인이 위반하는 것)은 보증인과 구상보증인 사이의 내부문제이고, 그 자체가 보증인의 구상보증상 지급청구에 대한 지급거절사유가 되지 못한다. 물론 위임조건이 구상보증에 편입된 한도 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의미에서 구상보증은 2중적 독립성(double autonomy)을 갖는다.²⁸⁾

그리고 URDG758 제2조와 제3조 b항에서는 URDG의 보증에 관한 규정은 구상보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확인(confirmation)

URDG758에서는 없는 규정으로서 ISP98에서는²⁹⁾ 상업신용장의 확인과 같은 성격의 확인을 규정하고 있다. 확인인의 확약은 개설인의 그것과는 별개의 독립된 약속이다.

보증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서류를 먼저 확인인에게 제시할 것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익자는 확인인을 경유하지 않고 개설인에게 직접 제시할 수 있다.³⁰⁾

27) ISP98 제4.21조

28) 청구보증통일규칙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2010, p.124.

29) ISP98 제2.01조 d항

그런데 만약 개설인이 부당하게 결제를 거절한다면, 수익자는 확인은행에 결제를 요구할 수 있다. 확인인으로서의 서류가 자신에게 최선차로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 개설인의 결제거절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한다면 서류제시장소를 자신의 영업소로 명시적으로 한정하여야 한다.³¹⁾

2. 심사

1) 만료일(expiry)³²⁾

(1) 영업중단이 되었을 때 유효기일 연장 여부

ISP98에서는³³⁾ 서류제시 최종일에 서류제시장소가 영업을 중단한 경우 이 유에 관계없이 영업재개 후 30일까지 유효기일이 자동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영업중단이 사전에 예상되면 서류제시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³⁴⁾ URDG758에서는³⁵⁾ 불가항력으로 제시를 못한 경우, 제시 후 서류심사를 못한 경우, 서류심사를 하였으나 지급을 못한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효기일 연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불가항력으로 수익자가 제시를 못하였다면 유효기일은 30일 연장된다. 따라서 불가항력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 수익자는 지급청구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 수익자가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를 하였으나 보증인이 심사를 못한 경우에는 시간경과가 보증인이 영업을 재개할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URDG758 제20조 a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서류 심사기간으로 5영업일이 허용된다. 예컨

30) 물론 보증신용장에서 개설인이나 확인인 중에서 누구에게 먼저 제시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침묵한 경우에도 수익자는 확인인을 경유하지 않고 개설인에게 직접 제시할 수 있다.

31) 보증신용장통일규칙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2008, p.91.

32) expiry는 신용장통일규칙 등에서는 유효기일이라 창하지만 본 글에서는 대한상의 공식 번역에 따라 만료일이라 표기함

33) ISP98 제3.14조

34) 신용장통일규칙 제36조에서는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여 은행 영업을 폐쇄 됨으로써 수익자가 유효기일 이내에 일치하는 제시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효기일이 연장되지 않는다

35) URDG758 제26조

대 서류 제시 후 3영업일에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 서류심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보증인은 영업 재개 후 2영업일 내에 서류심사를 완료하고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보증인이 서류심사를 완료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대금지급을 못한 경우에는 불가항력이 종료되면 보증인은 즉시 수익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이 규칙은 구상보증인의 불가항력에도 적용된다. 그러나 구상보증인의 불가항력에 대하여는 구상보증은행이 보증은행에 불가항력 사태 종료를 통지 한 후 30일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구상보증인의 불가항력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은 구상보증인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보증인이 구상보증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하면 보증인이 구상보증서에 따라 보증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보증인은 구상보증인의 불가항력이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불가항력이 종료된 후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

(2) 보증의 종료

ISP98에서는³⁶⁾ 보증신용장의 취소는 수익자의 서면통지나 보증신용장 원본의 반환과 같이 취소에 대한 수익자의 동의를 나타내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URDG758에서는³⁷⁾ 보증이 종료되기 위하여 반드시 보증서가 보증인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익자가 여전히 보증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보증상 수익자의 권리가 존속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것이다. 실무적으로 아랍계의 프로젝트 발주자가 수익자가 되는 경우 종종 보증서가 반환되기 전까지 보증이 유효하다는 문구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대방을 설득을 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보증 종료 통지의무

ISP98에서는 보증신용장 종료 사실을 개설의뢰인에게 통지할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URDG758³⁸⁾에서는 청구보증서 잔액이 없어서, 또는 보증인

36) ISP98 제7.01조

37) URDG758 제25조

38) URDG758 제25조 e항

의 채무면제에 대한 수익자의 서면서류가 제시되어서 청구보증이 종료되는 경우 보증인은 지체 없이 개설의뢰인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4) 유효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URDG758³⁹⁾에서는 청구보증서에 유효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보증은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종료되고, 구상보증은 보증의 종료일로부터 달력상 30일 후에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SP98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2) 결제 거절

(1) 서류심사기간

ISP98은⁴⁰⁾ 개설은행의 서류심사기간에 대하여 3영업일 이내는 “비합리하지 않은”(not unreasonable)것으로 보고, 7영업일을 경과하면 비합리적인 것으로 규정한다. 4영업일과 7영업일간의 서류심사기간의 비합리성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서류심사기간이 비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의 입증책임은 수익자가 아니라 개설인이 부담한다.

URDG758⁴¹⁾에서는 서류심사기간으로 5영업일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UCP600과 흐름을⁴²⁾ 같이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2) 결제거절 통지

ISP98⁴³⁾은 결제거절통지서에 발견된 모든 하자를 명시할 것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RDG758⁴⁴⁾에서는 결제거절사실과 결제거절하게 된 하자를 명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39) URDG758 제25조 c항

40) ISP98 제5.01조

41) URDG758 제20조 a항

42) UCP600 제14조 a항

43) ISP98 제5.02조

44) URDG758 제24조 d항

(3) 결제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항변

ISP98⁴⁵⁾에서는 개설인이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를 한 경우 개설의뢰인은 서류 수취 후 합리적인 기간(7영업일) 이내에 개설인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한 개설의뢰인은 서류에 하자가 있더라도 상환거절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URDG758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다.

3) 서류

(1) 서류 상호간 상충

ISP98에서는⁴⁷⁾ 제시된 서류는 오직 보증신용장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상호 불일치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그러나 URDG758에서는⁴⁸⁾ 보증상 요구된 서류상의 정보는 당해 서류와 다른 필요서류 또는 보증상의 정보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상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류 상호간 상충되면 하자로 간주하고 있다.

(2) 서류의 언어

ISP98에서는⁴⁹⁾ 수익자가 발행하는 서류는 보증신용장의 언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RDG758에서는⁵⁰⁾ 수익자와 보증신청인이 발행하는 서류는 청구보증의 언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급청구 관련 생략성 규정(default rule)

ISP98⁵¹⁾에서는 진술서는 보증신용장에서 요구된 경우에만 제시할 것을 요구

45) ISP98 제5.09조

46) ISP98 제5.09조 c항

47) ISP98 제4.03조

48) URDG758 제19조 b항

49) ISP98 제4.04조

50) URDG758 제14조 g항

51) ISP98 제4.17조

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에서 진술서가 요구되었으나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보증신용장에서 기술한 청구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진술서가 개설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URDG758⁵²⁾에서는 청구보증에서 요구되지 않았더라도 보증신청인의 채무불이행을 표시한 수익자의 진술서에 의해서 보강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보강진술은 그 지급청구서 내에 기재될 수도 있고, 혹은 그 지급청구서에 첨부되거나 그 지급청구서를 특정하는 별도의 서명된 서류에 기재되면 된다.

3. 기타

1) 개설의뢰인과 지시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URDG758⁵³⁾에서는 수익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이 사실을 개설의뢰인과 지시당사자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ISP98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2) 개설인/보증인의 재량권

ISP98⁵⁴⁾에서는 개설인의 개설의뢰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침해 받지 않고 자신의 재량으로 보증신용장 조건 또는 ISP98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설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는 영업시간 종료 후의 제시를 당일에 제시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과 제시일 후의 발행일이 기재된 서류를 일치하는 서류로 수리할 수 있다는 것 등이 있다.

그러나 URDG758에서는 보증인에게 재량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52) URDG758 제15조 c항

53) URDG758 제16조

54) ISP98 제3.11조 a항

3) 지점의 주체

ISP98에⁵⁵⁾ 따르면 개설인의 지점, 대리점 기타 사무소는 동일 국가내에 있더라도 보증신용장에서 타인(상이한 법적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RDG758에서는⁵⁶⁾ 동일한 보증인의 다른 국가에 있는 지점만 별개의 주체로 본다.

4) 양도

(1) 원신용장 제시 요구

ISP98⁵⁷⁾에서는 개설인은 원신용장의 존재와 유효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증신용장을 양도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URDG758에서는 청구보증서 자체의 실질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어 ISP98과 같은 규정이 없다.

(2) 기초관계 양도요건

URDG758⁵⁸⁾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양도 받았다는 양도인의 서명된 진술서가 있어야만 보증인이 청구보증서를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청구보증서를 상업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양수인은 기초계약관계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청구보증에 따라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⁵⁹⁾

(3) 법의 작용에 의한 양도

법의 작용(operation of law)에 의한 양도에 관하여 ISP98에서는⁶⁰⁾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인, 유산관리인, 청산인, 신탁관리인, 재산관리인, 승계회사,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익자의 권리의 승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수익자의 적

55) ISP98 제2.02조

56) URDG758 제3조 a항

57) ISP98 제6.03조 b항

58) URDG758 제33조 d항

59) Affaki and Goode, *op.cit.*, p.401.

60) ISP98 제6.11조

법한 양수수익자처럼 자신의 명의로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 법의 작용에 의한 양도에 관한 ISP98의 규정이 적용된다.

보증신용장상의 권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양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법의 작용에 의한 승계에 따라 이전될 수도 있다. 이에 본조 이하에서는 법의 작용에 의한 지급청구권양도, 즉, 수익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규정한다. 법의 작용에 의한 승계를 초래하는 사건으로는 사망, 능력상실, 파산 기타 도산,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상호변경 기타 그와 유사한 사항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법원(중재판정부 포함)이나 그에 준하는 사법기관, 정부기관, 행정절차에 기인하거나, 제정법률 자체의 작용에 기인할 수 있다.⁶¹⁾ 그러나 URDG758에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다.

IV. 적용상 유의점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에는 ISP98, URDG758 또는 UCP600을 적용할 수 있다. 보증신용장 또는 청구보증서 발행인 또는 다른 이용자는 이들 규칙 간의 차이점을 잘 분석하여 규칙 선택 및 적용에 실무상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들 규칙을 적용할 때 적용상 유의점은 다음과 같다.

1. 삭제(default) 해석 규정

앞에서 기술한 ISP98과 URDG758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것에 추가하여, 그의 독립적 보증에 ISP98과 URDG758 중 어느 것을 사용하기로 결정한 당사자는 ISP98의 규정 중 URDG758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적용하여 URDG758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일반적 용어 해석관련 규정

일반적 용어 해석관련 규정으로는 ISP98 제1.11조의 규정을 들 수 있다.

61) 보증신용장통일규칙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2008, p.192.

“Including”은 “그것이 포함되나 그것으로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A or B”는 A 또는 B와 둘 다를 의미한다. “either A or B”는 A 또는 B 그러나 둘 다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A and B”는 A와 B 둘 다를 의미한다.

2) 법률 영어 해석관련 규정

다음의 두 규정은 법률 영어에 익숙하지 않는 당사자가 함정에 빠지기 쉬운 생략성 규정(default rule)으로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사례는 ISP98 제1.11의 다음과 같은 규정이다.

“stated in the standby”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는 보증신용장의 실제 문구(actual text)를 의미한다. 반면에 “provided in the standby” 또는 이와 유사한 문구는 보증신용장의 실제 문구와 그것에 적용되는 것으로 표시된 이 규칙을 의미한다.

두 번째 사례는 ISP98 제4.09조 c항의 다음과 같은 규정이다.

보증신용장에서 문구가 정확(exact) 또는 동일할(identical) 것을 요구한 경우 보증신용장의 오타까지도 반복되어야 한다. 수익자가 지급청구를 할 때 오타를 그대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하자가 된다. 따라서 ISP98이 적용되는 독립적 보증에서는 이 조항의 적용 배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2. 규정 기술방법 상의 차이

ISP98은 URDG758보다 더 법률 지향적이다. 그 이유는 ISP98의 서문에 기술하고 있다.

“보증신용장은 분쟁 또는 개설의뢰인의 지급불능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규정은 상업신용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는 정밀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ISP98은 보증신용장 관행 해석에서 법률가와 판사를 위한 지침서로서 규정되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은행과 기업의 범주를 넘어서 신용평가기관, 정부당국, 법률가 및 판사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ISP98은 보증신용장의 미국 관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URDG758은 ISP98과는 다른 접근방법을 채택하였다. 즉 URDG758은 특정

지역적 관행 또는 법률 제도에 집중하지 않고, 독립적 보증관행에서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해당 보증서에서만 필요한 사항은 당사자가 청구보증서의 조건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그들이 원한다면 준거법률을 적용할 수도 있다.

결국 어떤 규칙이 다른 규칙보다도 더 우수하다고 추천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의 해당 거래에서 기대하는 것에 가장 잘 부합하는 규칙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나의 예로서 미국에서 발행되고, 확인될 예정인 독립적 보증으로 수익자가 제시하는 서류가 상호 모순이 있더라도 개설의뢰인이 일치하는 제시로 수락하려는 경우에는 서류 상호간 모순을 하자로 보지 않는 ISP98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구상보증을 발행되고, 구상보증에 따라 보증인이 독립적 보증을 발행할 때에는 구상보증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URDG758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V. 결 론

URDG는 유럽에 기반을 둔 ICC가 주도한 통일규칙인 반면에 ISP98은 UCC가 성문법으로 자리 잡은 미국에서 UCC 중 신용장을 규율하고 있는 UCC 제5편에 터 잡아 별도의 규칙으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ISP98은 매우 복잡하고 상세하며 방대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서 간략하게 기술된 URDG와 비교된다. ISP98의 어떤 조항은 지나치게 은행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ISP98에 익숙하지 않은 개설의뢰인과 수익자는 그것을 채택할 때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ISP98은 독립적 보증에 UCP가 사용될 때보다 훨씬 유용한 조항이 많이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UCP600, URDG758 및 ISP98은 제각기 내용상 용역과 실물거래 양 쪽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만 각 규범은 그 태생상 최적의 용도가 따로 있다. UCP는 실물거래에 최적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한다.

첫째, ISP98에 따른 보증신용장은 이행보증과 금융보증의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미국계 은행은 이행보증이나 금융보증을 발행할 때에는 태생이 미국인 ISP98 또는 UCP600을 준거규정으로 하고 있다. 한

편 보증신용장은 수출입거래에서도 쓰이는데 서류의 하자에 의한 지급거절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수출자는 필요서류의 제시를 최소화하면서 서류 상호간 불일치를 허용하는 보증신용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ISP98은 이행보증뿐만 아니라 금융보증에도 적용할 수 있어 적용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규범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실무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ISP98은 URDG가 규율하고 있지 않은 직불(direct pay)보증, 확인(confirmation), 위험매각(risk participation)등 금융보증에 필요한 조항을 가지고 있어 금융보증에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둘째, URDG758은 기존의 URDG458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것을 UCP600과 ISP98에서 상당수 차용하여 적용범위를 금융보증까지 확대하고 규범의 깊이를 더 했으나 ISP98과는 다른 점이 많다. 즉 URDG758은 구상보증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간접보증방식에 사용하기가 쉽고, 수익자의 부당한 청구(unfair calling)를 방지하고자 보강진술서(supporting statement)에 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실무상 은행은 고객이 원하는 양식과 준거규범을 따라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발주자가 원하는 양식이거나 준거규범이어서 개설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은행은 기업고객에 대해 앞선 보증지식을 가지고 기업고객이 지급보증이 어느 형태를 갖추어야 할 지 고민할 때 고객의 대외거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보증을 소개하여 고객의 업무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같은 이행보증이라 하더라도 ISP98과 URDG758은, 불가항력시의 제시연장기간, pay or extend시의 보증인 대응기간, 준거법과 재판관할 적용에 대해 차이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비교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동국가가 수익자인 지급보증은 ISP98가 정치적 이유 때문에 준거규정으로 채택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은행은 발행자로서 규범에 따라 자신이나 고객이 부담해야 할 위험요인도 인지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김영훈, 스탠드바이 신용장통일규칙(ISP98)과 회환신용장통일규칙(UCP500)과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13권, 2000.
- 박석재, 국제 신용장 거래에 관한 ISP98, 상사법연구 제19권 2호, 2000.
- _____, 스탠드바이 신용장의 준거법으로서의 UCP 500과 ISP98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 2003.
- _____, ISP98과 UCP500의 비교연구, 상사법연구 제20권 4호, 2002.
- _____, URDG758의 실무적 활용을 위한 UCP600과의 비교분석, 국제상학 25권 3호, 2010
- _____, ISP98의 특성과 UCP600과의 비교연구, 무역상무연구 41권, 2009.
- 박세운·한기문 · 김상만 · 허해관, 보증신용장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2008.
- 박세운·한기문 · 허해관 · 한재필, 청구보증통일규칙 공식번역 및 해설, 대한상공회의소, 2010.
- 서백현, 보증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ISP98)에 따른 서류검토기준, 무역학회지 제26권 3호, 2001.
- 이상훈, 보증신용장의 활용을 위한 법규적 접근, 무역학회지 제28권, 2003.
- Affaki, George, How do the ISP standby rules fit in with other rules? George Affaki reports, Documentary Credit Insight 5-1. 1999.
- _____, A User's Handbook to the URDG, 2001.
- _____, On revising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Documentary Credit Insight ,13-1. 2007.
- Affaki, Georges and Roy Goode, Guide to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758, ICC, 2011.
- Bertrams, Roeland, Bank Guarantees in International Trade,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 Burjaq, Mohammad M., Guarantees in the Arab world, Documentary Credit Insight 17-2, 2011.

Goods, Roy, Guide to the ICC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ICC Publication No. 510, 1992.

_____, ICC approves revised rules on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Credit Insight, 16-1, 2010.

Hauptman, Andrea, The struggle to harmonize guarantee practice, Documentary Credit Insight, 9-1, 2003.

Holzwarth, Winfried and Dan Tayler, Were the new ISP Rules on standbys fairly adopted and will they be useful? Winfried Holzwarth and Dan Tayler, debate, Documentary Credit Insight 4-4, 1998.

Stibravy, William , UNCITRAL "endorses" Incoterms 2000 and ISP98, Documentary Credit Insight 6-3, 2000.

Tazhibi, Farideh, The URDG and demand guarantees in Iran, Documentary Credit Insight, 14- 1, 2008

Wunnicke, Brooke, Diane B. Wunnicke and Paul S. Turner,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 of Credit, Aspen Law & Business, 2007.

Younge, Sarah, "Israel welcomes the URDG758, Documentary Credit Insight 17-1, 2011.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 ICC Publication No. 758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Web sites

www.dcpprofessional.com

www.mltn.go.kr

http://www.uncitral.org/pdf/english/texts_endorsed/Endorsement_INCOTE_RMS2000_ISP98_URCB_e.pdf,

<http://www.iccwbo.org/policy/banking/index.html?id=44522>,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regarding Difference of ISP98 and URDG758

Park, Sae Woon

Han, Ki Moon

There are two typical international rules in issuing guarantee for obligations of party which is responsible to provide some duties such as services, construction, plants, loan repayment, etc. The two internationally recognized rules are currently ISP98 and URDG758. ISP98 was firstly introduced in 1998 for American banks to issue standby letter of credit domestic and overseas for the area where UCP does not cover. URDG was introduced first in 1991 in the name of URDG458 but it has not been widely used and therefore new URDG named URDG758 came out in 2010 to accommodate more standard guarantee practice.

At the face of these two prevailing international rules, the users are sometimes confused which rule would be more suitable for their individual transaction. This led us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se two rules.

Our study suggests that URDG758 is more adequate for construction, ship-building and plants-supply obligations whilst ISP98 is for financial obligations. Also attentions are required when issues such as counter guarantee, governing rule, presentation period, document examination period and default statement exist. This is because ISP98 and URDG758 have different view points.

Key Words: ISP98, URDG758, Independent Guarantee